



해 양 수 산 부

수신 수신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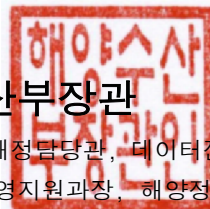
(경유)

제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0톤 미만의 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부담을 줄이고,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불임과 같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양수산부령 제813호, 2026년 8월 25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 1.(개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1부
2.(개정전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1부. 끝.

해양수산부장관



수신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데이터전략팀장,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양수산물과학기술정책과장,
 해양개발과장, 해양레저관광과장, 해양수산업생명자원과장, 해양환경정책과장, 해양공간정책과장, 해양보
 전과장, 해양생태과장,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 국제협력총괄과장, 해양영토과장, 통상무역협력과장, 수
 산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수출가공진흥과장, 소득복지과장, 원양산업과장, 수산직불제팀장, 어업정책
 과장, 수산자원정책과장, 지도교섭과장, 어선안전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 어촌어항
 과장, 해운정책과장, 연안해운과장, 선원정책과장, 항만물류기획과장, 항만물류산업과장, 항만안전보안
 과장, 스마트해운물류팀장, 해사안전정책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항행정보정책과장, 첨단해양교통관리
 팀장, 항만정책과장, 항만개발과장, 항만연안재생과장, 항만기술안전과장,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장, 기획총괄과장, 가족지원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운영지원과장), 국립해양조사원장(운영지원
 과장), 동해어업관리단장(운영지원과장), 서해어업관리단장(운영지원과장), 남해어업관리단장(운영지원
 과장), 부산해사고등학교장, 인천해사고등학교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
 원해사안전과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포항지방해양수산
 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전과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선원해사안
 전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조사관), 국립수산물학
 원장(운영지원과장),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운영지원과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뷰로베리타스한국지점,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사단법인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사위험물
 검사원이사장

주무관	최대한	해양수산사무관	지민철	과장	전결 2026. 8. 27.
협조자				남창섭	
시행	해사산업기술과-3420	(2026. 8. 27.)	접수	선원해사안전과-15290	(2026. 8. 27.)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수정동) 아이엠빌딩 10층 해양수산부 / http://www.mof.go.kr				
전화번호	051-773-5833	팩스번호	051-773-5889	/ mylightworld@korea.kr	/ 대한민국 공개